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. 2. 14 선고 2022가단322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. 17.

판 결 선 고 2023. 2. 14.

주 문

1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C(D생)와 피고 사이의 2019. 3. 13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)

판사 조혜수

별지